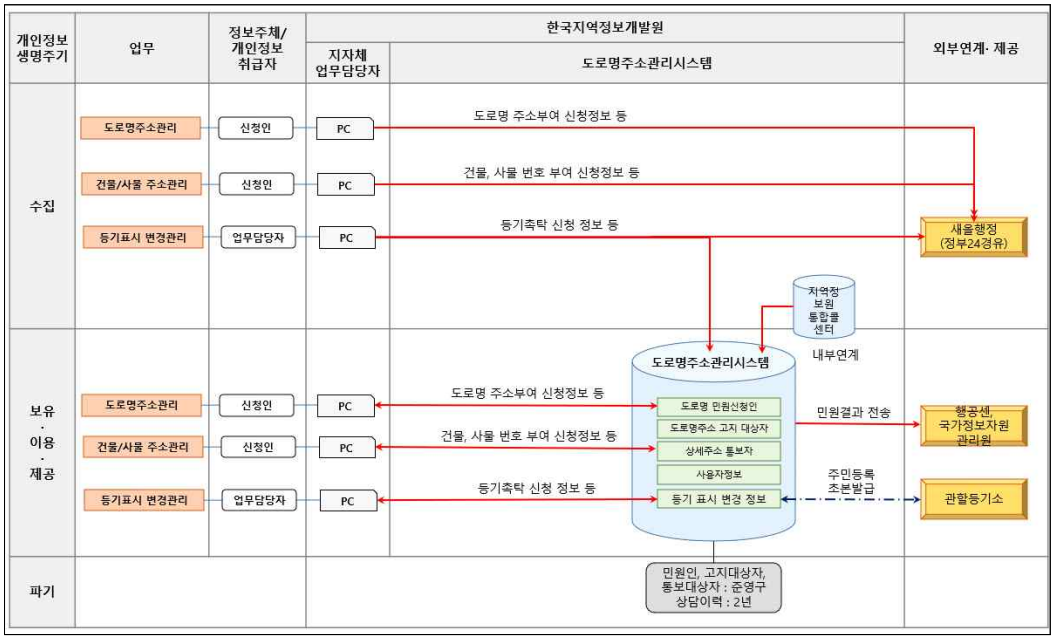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행정안전부</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한국전산감리원</td><td>평가 기간 (사업 기간)</td><td>2025. 07. 21~ 2025. 09. 30 (2025. 07. 15~ 2025. 12. 31)</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주소정보관리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5. 1. 1 ~ 2025. 12. 31</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21.6.9.)을 반영하여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모든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입체적 주소체계로 혁신 필요
○ 노후화되어 성능·기능이 미흡한 지자체 주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중앙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여 안정적인 업무체계 마련
○ 민간에서 태동하고 있는 주소정보기반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능형 주소정보 DB 구축·및 주소정보 유통 플랫폼 마련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3호</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7,112,084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3차 구축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한국지역정보개발원</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 새정부 국정과제 (스마트 주소체계 구축) 채택
- 도로명주소법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및 제28조(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제1차 주소정보 활용기본계획('22.6.2.))</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3">-</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완성) 시스템 사용자 편의 개선과 주소정보의 품질수준 제고, 현장 중심의 시스템 운영 기반 개편 완료
○ (스마트KAIS 기능 확대) 주소정보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건물·사물주소 부여, 출입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대국민 불편사항 개선 및 산업계의 주소정보 활용확대 지원 강화를 위한 누리집 서비스 고도화
○ (클라우드 전환 및 DB이관) 자치단체의 노후 인프라 중앙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및 자치단체 DB 이관·통합 추진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확보,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모의훈련 등 안정화</td></tr>
<tr><td>운용체계</td><td colspan="6">운용체계 변경 없음</td></tr>
</table>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				
평가대상파일(지자체신청정보총계)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도로명 주소 민원인 정보 (가칭)	1,145,653명	**[필수]** 성명, 주소 **[선택]**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	없음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등 민원 접수
	도로명 주소 고지 대상자 (가칭)	1,464,015명	**[필수]** 성명, 주소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우정 사업본부, 관할 등기소	직권에 의한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해 대상자 고지
	상세주소 통보 대상자 (가칭)	3,323명	**[필수]** 성명, 주소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우정 사업본부, 관할 등기소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해 대상자 고지
	등기표시 변경 민원인 정보 (가칭)	516명	**[필수]** 등기명의인 성명, 변경 전,후 주소, 부동산표시(지번, 도로명주소)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우정 사업본부, 관할 등기소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도로명 주소 상담이력	686명	**[필수]** 성명, 전화번호, 상담 이력	없음	상담 내역 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신청인은 지자체에 도로명주소관련, 건물/사물주소 관련 민원신청을 직접 할수도 있으며, 정부24를 이용한 신청한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연계, 수집하고 이를 KAIS시스템에 저장함, 또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체 처리하는 변경사항은 새올행정을 통하여 신청처리 절차를 수행하며, 종이 신청서는 신청정보 입력 후 즉시 파기함 2.업무담당자는 도로명 주소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를 조회하고 도로명 고지문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받아 처리함 3.도로명관리관련 각종 신청에 대한 결과는 각 지자체의 환경에 따라 여러 경로(방문 전달, 우체국으로 오프라인/시스템 전달, SMS)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하며, 4.업무담당자는 등기촉탁대상 판단 후 등기촉탁서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함 5.총괄관리자는 지자체별 관리자의 성명, 아이디, 임시비번을 전송하며, 지자체관리자는 지자체 관항 사용자의 등록/삭제등을 관리함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부시스템인 통합콜센터에서 주소정보 관련 상담이력 정보는 내부연계하여 처리할 예정임				

○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평가기준 점검항목 조정 내역 현황표]

구 분	추가, 변경 또는 재외 항목(코드)	추가, 변경 또는 제외 사유
항목 추가	-	(추가항목 없음)
항목 변경	-	(변경항목 없음)
항목 제외	1.1.1~1.4.3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에 의거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행정안전부 '23 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시스템 시범전환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2024.05.20. ~ 10.22)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 근거
	5.1.1~5.1.6 5.2.1~5.2.7 5.3.1~5.3.2 5.4.1~5.4.2 5.5.1~5.5.9 5.6.1~5.6.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RFID, 생체정보, 위치정보, 가명정보, 이동형 영상정보 평가 분야의 경우 대상시스템과 연관이 없어 평가 제외

주요 평가기준

○ 대상기관의 주요 관심사항 및 관련 평가항목
- 도로명주소법[시행 2025. 2. 21]
-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 2025. 8. 26.]
-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시행 2024. 6. 7.]
-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시행 2021. 6. 9.]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2.]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25. 10. 2][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시행 2023. 9. 22.][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시행 2025. 4. 1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5. 4]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24. 10. 3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시행 2024. 4]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 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 -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주소 부여 세부기준), 제22조(폐지 신청) 등 별지서식에 의한 도로명/건물/사물 주소 관련한 민원처리로 민원법 제8조(민원의 신청)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위탁받는자(재수탁자) : 엘티메트릭 컨소시움 ※ 본 시스템의 인프라(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토리지)관리, 백업 및 복구 관리, 보안관리, 재해복구관리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함 ○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평가된 사항 관련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미징구 시 인식 저하로 개인정보 유·노출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대량 개인정보 다운로드,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 등 위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확보하지 않고, 접속기록 관리대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관리적 책임의 위험이 있음 - 접속기록의 덮어쓰기를 방지하지 않을 경우, 접속 기록의 훼손으로 책임 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일정기간 미접속시 계정잠김기능, 시스템관리자 등 특수권한 로그인 알림 기능이 없으면 계정 도용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위험 있음 - 접근권한 이력을 보관하지 않을 시 정당한 취급자의 권한관리 책임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통합에 따른 정보처리자의 변경 관련 권한이력의 책임한계를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이 있을 수 있음 - 재해재난발생 시 대응절차가 미흡하고, 정기적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해재난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개인정보가 손실될 위험이 있음
위험요인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1.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 개인정보취급자 등록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2.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개선 - 접근권한 접속이력 관리에 대한 처리기준 확정

에 대 한 개 선 조 치	방안	- 장기 미접속 계정 잠금 및 관리자 로그인 알림 - 접속기록 보관·관리 및 점검 - 접속기록 덮어쓰기 방지기능 적용 - 재해재난 대비 프로세스 개발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적합성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와 제3자 제공여부
평가결과		○ 평가 전제사항에 대한 내역 본 평가 대상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는 표준 배포시스템을 통합DB형태로 서울소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5년도 12월 운영목표로 진행중임. 대국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하에 관리가 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함에 따라,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통합되어 운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주소정보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본부 도로명주소 생활공간과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가정하였음. 다만 계획된 통합시스템 운영 여건에서 현재 운영중인 지자체 개인정보처리자로 유지, 타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될 경우는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또한 관리가 시작되는 기점(25년도 12월초)으로 관리활동 개시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결정/예정된 사항이 미비하여 관련항목의 지침, 매뉴얼 존재시 이행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항목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 권리보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에 의거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행정안전부 '23 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시스템 시범전환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2024.05.20. ~ 10.22)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6개 평가항목 중 5개의 항목을 이행(83%) 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17%)하고 있음.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25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3개 항목을 제외하고 12개의 항목을 이행(100%) 하고 있음.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36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5개 항목을 제외하고 26개의 항목을 이행(84%) 하고 있으며, 5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16%)하고 있음.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4개 평가분야 16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